

#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대구대학교와 경산시는 상호협력을 통해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과 공동사업발굴 및 추진을 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경산시와 대구대학교가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건립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여 공동협력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내용] 협약기관이 추진하는 상호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 대구대학교는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제공
2. 운영기간은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준공 후 20년으로 하며, 상호협의를 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종료 후 대학에 양여
3. 경산시는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건축물 설계부터 준공까지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상호협력
4. 대구대학교는 전문지식과 인력, 시설을 활용한 사업 협력을 통해 행복한 동물친화형 도시를 구축하는데 협력
5. 경산시는 관련학과의 교육실습장 활용 및 교육활동 프로그램 진행시 공간 사용 및 전문인력 지원에 협조
6. 경산시는 향후 반려동물 사업 추진 시 상호 연계하여 대구대학교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협력

제3조 [비밀유지 및 홍보] 협약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으며, 공공 협력사업의 성과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홍보한다.

제4조 [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당사자들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협약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에 이의가 있거나,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6조 [기타사항]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한 후 각 협약기관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3월 30일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총장 박순진

박순진



경산시  
GYEONGSAN CITY

시장 조현일

조현일